

구 투자법	신투자법 2021
<p>(신설) 제 1장 -----</p>	<p>제 1조 본 법은 아래와 같이 캄보디아 국민 또는 외국인 캄보디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양질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호의적인 법률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캄보디아의 경제 구조를 다양화 시키고, 지역 및 글로벌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경쟁력 제고;</li> <li>2. 자본유입 증대 및 기술, 지식 및 노하우의 이전을 통한 지역산업의 생산성 증진, 지역 및 글로벌 공급체인과의 연계성 강화;</li> <li>3. 사회경제적 정책을 지원하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경쟁력 있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구축;</li> <li>4. 국익에 부합하는 포괄적이고 공정한 법률 체계 구축을 통해 캄보디아 내에서 투자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li> </ol>
<p>(변경) 제 1조 본 법은 모든 투자자격 프로젝트 수행사업 대상으로 투자 적격 프로젝트 관리 및 절차에 적용된다. 적격 투자 프로젝트만이 이 법의 범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제 2조 본 법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적격 투자 프로젝트, 확대 적격 투자 프로젝트 및 보증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된다.</p>
<p>(변경) 제 3조 -----</p>	<p>제 3조 ----- "투자 프로젝트"는 적격 투자 프로젝트, 확대 적격 투자 프로젝트 또는 보증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p>
<p>(변경) "적격 투자 프로젝트"는 "QIP"로 약칭되며, 등록증을 받은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p>	<p>"적격 투자 프로젝트"는 "QIP"로 약칭되며, <u>캄보디아 개발위원회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로부터</u> 등록증을 받은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p>
<p>(변경) "수출적격 투자 프로젝트"는 <u>그 생산물이 부칙령의 규정에 따라 수출되는</u> 적격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p>	<p>"수출 적격 투자 프로젝트"는 <u>캄보디아 밖의 구매자나 양수인에게 제품의 일부를 판매하거나 이전하는</u> 적격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p>
<p>(변경) "산업지원 적격 투자 프로젝트"는 <u>그 생산물 전량(100%)을 수출업체/수출산업에 원자재 또는 부속품으로 공급하는</u>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p>	<p>"산업 지원 적격 투자 프로젝트"는 <u>제품의 일부가 수출 산업에 공급되는</u> 적격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p>
<p>(신설)</p>	<p>"국내 지향 적격 투자 프로젝트"는 <u>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u> 적격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p>

구 투자법	신투자법 2021
(신설)	"확대 적격 투자 프로젝트"는 "EQIP"로 약칭되며, 기존 생산의 확대, 동종 라인 내 제품 다각화를 통한 확대, 생산성 향상 및 환경보호를 위한 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확대, 기본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프라 확대 또는 하위 법령으로 결정되는 다른 형태의 확대 등 모든 형태의 적격 투자 프로젝트의 확대를 말한다.
(신설)	"보증 투자 프로젝트"는 "GIP"로 약칭되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등록된 투자 프로젝트로서, 조세우대대상이 아니며 투자보증으로만 명확히 언급된 프로젝트를 말한다
(신설) * 개정투자법 하위법령(Prakas) 내용 추가 2005년 9월 27일 제 111 ANK/BK	"생산 투입물"은 석유제품 및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 생산과정에서 변형된 원자재, 반제품 및 생산 부산품 및 물품을 말한다.
(신설) * 개정투자법 하위법령(Prakas) 내용 추가 2005년 9월 27일 제 111 ANK/BK	"건설장비"는 에어컨을 제외한 램프, 전선, 광케이블, 싱크대, 수도꼭지, 욕조,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및 배관 등 품질, 편의성 및 사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물에 사용 또는 부착을 위해 조립, 제조 또는 생산되는 장비를 말한다. 어느 투자분야 이든지 투자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위한 에어컨의 수입은 재정 관리법 또는 하위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변경) "조건부 등록증"은 본 법 제 7조 3항에 의해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로부터 발급된 서류를 의미한다. "최종 등록증"은 본 법 제7조 7항에 의해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로부터 발급된 서류를 의미한다.	"등록증"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가 투자 프로젝트로 인정하여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변경) "투자자"란 적격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투자자"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등록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투자활동"이란 현행 법규에 따라 주관기관이 서면으로 설립, 취득, 매각, 이전, 확장, 합병, 인허가를 받은 캄보디아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말한다.
(변경) "투자신청서"는 어느 누구든지 적격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안서를 의미한다.	"투자 프로젝트 신청서"란 투자자가 적격투자프로젝트 및 보증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를 말한다. 이 신청서에는QIP 확대 신청서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신설) * 개정투자법 하위법령(Prakas) 내용 추가 2005년 9월 27일 제 111 ANK/BK	"생산장비"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생산 체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중장비, 기계 도구 및 기타 장비를 말한다. 어느 투자분야 이든지 투자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위한 자동차 수입은 재무 관리법 또는 하위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구 투자법	신투자법 2021
(신설)	<p><u>"건설자재"란 적격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를 포함하여, 건설 초기단계 또는 확대 투자활동에 사용되고, 건설에만 완전히 전환 또는 사용되는 건설 품목을 말한다.</u></p> <p><u>본 조에 명시된 건설자재, 건설장비 및 생산장비는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 표준 및 수량을 충족해야 한다.</u></p>
(변경) "신청인"이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투자 프로젝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p><u>"신청인"이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투자 프로젝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u></p>
(신설)	<p><u>"하위 법령"은 캄보디아 투자법의 시행에 관한 하위 법령을 말한다.</u></p>
(변경) <del>제 2장</del> <del>제 3조</del>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CDC"로 약칭되며, ----	<p style="text-align: center;"><del>제 2장</del> <del>제 4조</del></p> <p>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CDC"로 약칭되며, ----</p>
(신설)	<p><u>제 5조</u></p> <p><u>CDC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필요에 따라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부위원장과 구성원들을 포함한다. 본 법 제4조에 명시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총리는 정부 또는 CDC 집행기구의 구성원에게 자신의 업무의 일정 범위 또는 CDC의 활동에 관련된 자신의 권한을 재량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에는 현행 법규에 따른 예산 및 인적 자원의 관리 및 사용이 포함된다.</u></p> <p><u>CDC 구성원의 임명은 왕실령에 의한다.</u></p>
(변경) <del>제 4조</del>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2개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캄보디아 재건개발위원회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p><u>제 6조</u></p> <p><u>CDC의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DC사무국;</li> <li>- 캄보디아 협력개발위원회, 약칭"CCDB";</li> <li>-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 약칭"CIB"</li> </ul> <p><u>CDC, CCDB 및 CIB의 사무국은 각각 1명의 사무총장이 지휘하며, 필요에 따라 사무차장들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u></p> <p><u>CDC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위 법령으로 추가 조직 또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다.</u></p>

구 투자법	신투자법 2021
(신설)	<p><b>제 7조</b>  <u>CDC는 국가 예산 아래 별도의 예산을 보유하고, 현행 법규에 따라 공무원 및 계약된 직원은 현행법규를 따라야 한다</u></p>
(변경) 제 5조 CDC의 조직과 기능은 왕실령으로 정한다	<p><b>제 8조</b>  <u>CDC의 조직과 기능은 왕실령으로 정한다</u></p>
(신설)	<p><b>제 3장 지방 차원의 투자 매커니즘</b>  <b>제9조</b>  <u>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투자의 검토 및 승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쟁 해결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지방 행정부의 위원회로서 역할을 하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위임된다. 지방 투자 소위원회의 권리, 권한, 투자 규모, 조직 및 기능은 별도의 하위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u></p>
(변경) 제 3장 투자절차	<p><b>제 4장 투자 프로젝트 등록 및 수행</b></p>
(변경) 제 6조 QIP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개발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절차는 본 법과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p><b>제 10조</b>  <u>QIP, EQIP 또는 GIP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CDC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u>  <u>투자 프로젝트 신청은 정보기술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u></p>
(삭제) 제 7조 투자개발위원회는 투자제안서를 접수한 후 삼(3) 근무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조건부 등록 확인증 또는 부적합 통지를 발급해야 한다 투자 개발위원회는 투자제안서가 하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또한 제안된 활동이 하위법령에 규정된 투자금지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부 등록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제안서가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위원회는 시정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해야 한다. 조건부 확인 등록증에는 해당 적격투자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승인서, 인가서, 인허장,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발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조건부 확인등록증에는 본 법 14조에 의거 적격 투자 프로젝트 우대조치를 확인하고 법적 실체에 관한 법력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삼 근무일 이내에 조건부 등록확인증 또는 부적합 통지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등록 확인증이 하위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 승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 투자법	신투자법 2021
<p>(삭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신청인을 위하여 조건부 등록확인증에 열거된 관련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신청인을 대리하여 모든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조건부 등록확인증에 열거된 인가, 인허,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의 발급을 담당하는 모든 정부기관은 조건부 등록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28일 째 되는 근무일까지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타당한 법률적인 근거 또는 사유없이 이 28일 째 되는 근무일의 시한까지 신청인의 신청을 처리 및 회신하지 아니하는 모든 공무원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한다.</p> <p>개발위원회는 조건부 등록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28 근무일 이내에 최종 등록확인증을 발급함으로써 조건부 등록확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캄보디아 개발평의회는 조건부 등록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28 근무일 이내에 최종 등록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최종 등록확인증이 발급되더라도 해당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법률로 요구되는 그 밖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한다.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관할 부처 및 기관에서 특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다. 상기 제 6항에 규정된 28 근무일의 시한이 경과한 후에 발급이 된 경우에도 모든 관할기관은 법령에 정한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최종 등록확인증의 발급일은 투자적격프로젝트의 개시일로 간주한다.</p>	<p>제 12조 내용으로 전체 변경 참고</p>
<p>(신설)</p>	<p><b>제 12조</b></p> <p>투자 프로젝트 신청서를 받은 <b>CDC</b>는 원스톱 서비스 메커니즘을 통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원스톱 서비스 메커니즘은 <b>CDC</b>의 조정 하에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및 양도받아 <b>CDC</b>에 파견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표자가 투자 프로젝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다.</p> <p>제안된 투자 프로젝트가 하위 법령에 의해 별도로 결정될 네거티브 목록에 없는 경우, <b>CDC</b>는 20근무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증에는 다른 등록 및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등록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비 자료가 포함된 식별번호, QR코드 또는 기타 기술과 함께 바코드를 부착해야 한다.</p> <p>투자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고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은 신청인 또는 투자자에게 <b>CDC</b>가 발행한 등록증에 부착된 식별 번호, QR 코드 또는 기타 기술과 함께 바코드에 이미 포함된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p>

구 투자법	신투자법 2021
(신설)	<p><b>제13조</b>  등록증을 발급받은 투자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현행 법규에서 요구하는 다른 인허가 취득이 면제되지 않는다.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등록증 획득을 위한 법과 조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CDC가 조정 운영하는 원스톱 서비스 메커니즘을 통해 모니터링 및 검사를 받는다.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은 CDC가정한 특정 일정에 따라 프로젝트의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행보고서의 상세한 형식은 CDC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CDC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투자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민원이 있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장 검사를 면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p>
(신설)	<p><b>제14조</b>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투자 프로젝트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별도의 하위 법령으로 정한다.</p>
(변경) 제 5장 투자 보장	제 4장 투자 보장 및 보호
(변경) 제 8조 외국인 투자자는 캄보디아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p><b>제15조</b>  무력 충돌, 내란 또는 비상사태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자는 합리적인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법과 정책이 있는 경우, 배상, 보상 또는 기타 경제적 구제책과 관련하여 차별 없는 대우를 받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캄보디아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p>
(변경) 제 9조 국가는 캄보디아 내 투자자의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p><b>제 16조</b>  국가는 캄보디아 내 투자자의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 조치를 취할 수 없다.</p>
(신설)	<p><b>제 17조</b>  국가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용 또는 수용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차별적;</li> <li>2.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li> <li>3. 수용에 대한 법률 및 절차 준수.</li> </ol>

구 투자법 (변경)	신투자법 2021
<p><b>제 10조</b>            캄보디아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지 않는다.</p>	<p><b>제 18조</b>            캄보디아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지 않는다.</p>
<p>(변경)</p> <p>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자는 자유롭게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입에 대한 지급 및 용자금의 원금 이자 송금;</li> <li>2. 특허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지급</li> <li>3. 이익의 송금; 및</li> <li>4. 제 8장에 따른 투자 자본금의 회수</li> </ol>	<p><b>제 19조</b>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자는 자유롭게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최초 자본금을 포함한 자본금</u></li> <li>2. <u>소득, 이익금, 배당금,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경영 및 기술지원 수수료, 이자 및 기타 투자소득;</u></li> <li>3. <u>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의 전체 또는 부분의 매각 또는 해산에 따른 수입;</u></li> <li>4. 수입에 대한 지급 및 용자금의 원금 이자 송금;</li> <li>5. <u>내란, 국가에 의한 수용 또는 몰수 시 보상금 지급;</u></li> <li>6. <u>법원 결정 또는 중재 판결을 포함하여 분쟁 해결로 발생하는 지급;</u></li> <li>7. <u>직원의 기타 수입과 급여.</u></li> </ol>
<p>(신설)</p>	<p><b>제 20조</b>  <u>투자자의 지적 재산권은 캄보디아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규에 따라 보호된다.</u></p>
<p>(삭제)(신설)</p> <p><b>제 6장 토지 소유 및 이용</b></p> <p><b>제 16조</b>  <del>헌법 및 토지의 소유 및 이요영 관한 법령에 따라</de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토지 소유권은 현행 법규에 따라 캄보디아 국적의 사람에게만 부여된다.</li> <li>2. <del>투자자는 양허, 무기한 장기 임차 및 요청할 경우 연장할 수 있는 한정된 단기 임차를 포함한 토지의 사용이 허용된다. 공유지에 관한 사용권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99년까지 허용된다.</del></li> <li>3. 투자자는 법률상 허용되는 토지에 관산 사용권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u>그 토지상에 위치한 부동산 및 동산과 해당 QIP에서 사용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u></li> </ol> <p><del>투자자는 운용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토지사용권을 더 이상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del></p> <p><b>*제 6장 토지 소유 및 이용 내용 축소</b></p>	<p><b>제 21조</b>  <u>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토지 소유권은 현행 법규에 따라 캄보디아 국적의 사람에게만 부여된다.</u>  <u>투자자는 현행 법규에 따라 경제적 토지양허, 영구 임대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를 통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u></p>

구 투자법

신투자법 2021

(신설)(변경)

제 17조

캄보디아에서 투자자들은 출입국관리 및 노동법에 따라 그들이 선택하는 캄보디아 국민 및 외국의 국민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제 18조

투자자들은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하도록 허용된다. 다만:

그 자격 및 전문적 지식이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 국민으로부터는 입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그와 같이 고용하는 경우 그 종업원의 여권, 증명서 및 학위 그리고 이력서를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문이 필요하며, 투자자는 노동부로부터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캄보디아인 직원들에게 적절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캄보디아인 직원들의 고위 승진은 시간 경과에 따라 시행한다.

제 19조

외국인 근무자는 캄보디아에서 벌어들인 임금 및 급여를 세금 납부한 후 은행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도록 허용된다.

\* 제 7장 고용업무

제 17조 및 제 18조 내용 축소 변경

제 22조

본 법에 따라 투자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다음 권리를 갖는다.

1.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 또는 운영할 자격을 갖춘 캄보디아 직원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현행 법규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쿼터 내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 또는 운영할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권리.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허가는 현재 상황에 근거하며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2.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본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임시 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근로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외국인 직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시 장기체류비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본인과 외국인 직원의 근로 허가서 및 취업 기록부를 발급받을 권리

CDC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는 투자자의 요청 시, 현행 절차에 따라 임시 장기체류비자가, 근로 허가서, 취업 기록부 신청 및 기타 필요한 목적에 사용될 투자 프로젝트 관련자에 대한 투자 지위 인증 서한을 발행한다.

본 조에 명시된 근로 허가서 및 취업 기록부를 신청하기 위한 특별 절차는 CDC와 노동을 담당하는 부처 간의 공동 시행규칙령에 명시된다.

본 조에 명시된 임시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형식과 특별 절차는 별도의 하위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구 투자법	신투자법 2021
<p>(신설)</p>	<p><b>제 23조</b></p> <p>투자자는 <b>CDC</b>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등록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p> <p>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 형식 및 절차는 하위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p>
<p>(삭제)</p> <p><b>제 5장 투자 인센티브</b></p> <p><b>제 12조</b> 정부는 적격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본 장에 의한 우대조치를 제공한다</p>	
<p><b>제 13조</b> 우대조치 및 특전에는 관세 마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포함된다.</p>	
<p>(신설)</p>	<p><b>제 6장 투자 인센티브</b></p> <p><b>제 24조</b> 다음의 투자 분야와 활동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혁신적인 첨단산업 또는 연구개발 산업</li> <li>2. 혁신적이거나 경쟁력이 높은 신산업 또는 고부가가치 제조업;</li> <li>3. 지역 및 글로벌 생산 체인을 공급하는 산업;</li> <li>4. 농업, 관광, 제조업, 지역 및 글로벌 생산 및 공급 체인을 지원하는 산업;</li> <li>5. 전기 및 전자 산업</li> <li>6. 부품, 조립 및 설치 산업;</li> <li>7. 기계 및 기계 산업;</li> <li>8. 국내시장 또는 수출에 서비스하는 농업, 농공 산업, 농업가공산업 및 식품가공산업;</li> <li>9. 우선 분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클러스터 개발, 산업단지 및 과학기술혁신단지;</li> <li>10. 관광 및 관광 관련 활동;</li> <li>11. 경제특구;</li> <li>12. 디지털 산업;</li> <li>13. 교육, 직업훈련 및 생산성 증진;</li> <li>14. 건강;</li> <li>15. 물리적 인프라;</li> <li>16. 물류;</li> <li>17. 환경 관리 및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및 순환 경제;</li> <li>18. 녹색 에너지,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에 기여하는 기술;</li> <li>19. 캄보디아 정부가 사회경제적 발전의 잠재력이 있다고 간주하는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투자분야 및 투자활동.</li> </ol>

구 투자법	신투자법 2021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b>제25조</b>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본 법 제24조에 열거된 섹터 및 투자 활동은 QIP지위를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기본 세금 및/또는 관세 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다.  본 법 제24조에 열거된 투자분야 및 투자 활동 중 세금 및 관세 인센티브를 둘 다 받을 수 없는 섹터 및 투자 활동은 하위 법령의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변경)</p> <p><b>제 14조</b>  <b>제 13조에 규정된 우대조치에는 아래와 같이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포함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승인 받음으로 조세법에 의거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면제 기간은 사업개시 초기기간(Trigger Period) + 3년 + 우선권 부여기간으로 구성된다. 우선권 부여기간은 재무관리법에서 정한다  최대 사업개시 초기기간(Trigger Period)는 최초 순이익 발생 연도 또는 QIP 승인 후 최초의 수익 발생년도로부터 3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li> <li>2. 위의 1항에 따른 QIP의 자격은 하위 법령에 명시되는 개발위원회로부터 연간 의무 이행 증명서를 획득한 QIP에 적용된다.</li> <li>3.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조세법에 정한 면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li> <li>4. 상기 제 14조 1호에 의한 자격을 사용하는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조세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li> <li>5. 내수시장 적격 투자프로젝트는 원자재, 중간재 및 생산 투입용 건설자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설비 및 건설자재를 관세 면제조건으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그 관세면제는 하위 법령으로 명시한다.</li> <li>6. 세관 제조용 보세창고제도를 이용하기로 선택하거나 이미 선택한 수출적격 투자프로젝트 이외의 QIP는 원자재, 중간재 및 생산 투입용 부속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용 자재를 관세 면제 조건으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하위 법령으로 명시한다.</li> <li>7. "지원산업" QIP는 원자재, 중간재 및 생산 투입용 부속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설비, 건설자재 및 생산 투입용 자재를 관세면제 조건으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하위 법령으로 명시한다.</li> </ol>	<p><b>QIP로 등록된 투자 활동은 다음 두 가지 옵션 중 기본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다.</b></p> <p><b>1. 옵션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분야 및 투자활동에 따라, 최초 소득을 얻은 시점부터 3년에서 9년까지 소득세 면제. 소득세 면제 기간 및 투자분야 및 투자 활동은 재무 관리법 및/또는 하위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세 면제 기간이 만료된 후, QIP는 다음과 같이 총 세금을 비례하는 단계별 납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2년 동안25%;</li> <li>• 이후2년 동안50%;</li> <li>• 마지막2년 동안75%.</li> </ul> </li> <li>○ 소득세 면제 기간 중 선납세 면제;</li> <li>○ 독립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소세 면제;</li> <li>○ 다른 법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출세 면제; 또는</li> </ul> <p><b>2. 옵션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세법에 명시된 특별 감가상각을 통한 자본 지출의 공제;</li> <li>○ 최단 3년 및 최대9년간 발생한 특정 비용을200%까지 공제할 수 있는 자격. 투자분야 및 투자활동, 특정 비용 및 공제 기간은 재무 관리법 및/또는 하위 법령에서 정한다.</li> <li>○ 재무 관리법 및/또는 하위 법령에서 결정되는 투자분야 및 투자활동에 기초한 특정 기간 중 선납세 면제;</li> <li>○ 독립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소세 면제;</li> <li>○ 다른 법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출세 면제;</li> </ul>

구 투자법	신투자법 2021
<p style="text-align: center;"><b>구 투자법 (변경)</b></p> <p>8. 어느 투자자를 인수하거나 투자자와 합병한 자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하위 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합병 또는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 투자자의 QIP의 일체의 보장, 권리 특권 및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 30조 내용 분리</p> <p>9. 개발위원회에서 발행하 개발 우선순위 목록에 열거된 지정 SPZ 또는 EPZ에 위치하는 QIP는 이 법에 규정된 다른 QIP와 동일한 우대조치 및 특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10. QIP는 특정하여 언급된 활동을 제외하고, 시행중인 세관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수출세를 100% 면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11. QIP는 외국 국민을 캄보디아 국내에서 관리자, 기술자 및 숙련 노동자로 고용하기 위한 비자 및 노동허가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로부터 출입국 관리법 및 노동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상기 외국 국민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체재비자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신투자법 2021</b></p> <p>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인센티브에 더하여</p> <p>a. 수출 QIP 및 산업 지원 QIP는 건설 자재, 건설 장비, 생산 장비 및 생산 투입물 수입에 대한 관세, 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b. 국내 지향 QIP는 건설 자재, 건설 장비 및 생산 장비의 수입에 대한 관세, 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 투입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재무 관리법 및/또는 하위 법령에서 결정된다.</p> <p>경제특구에 위치한 QIP는 본 법에 명시된 다른 QIP와 동일한 인센티브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신설)</b></p>	<p><b>제27조</b></p> <p>본 법 제26조에 규정된 기본 인센티브 외에 QIP로 등록된 투자활동은 다음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QIP수행을 위하여 현지에서 생산된 투입물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li> <li>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150%를 공제받는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연구, 개발 및 혁신;</li> <li>b. 캄보디아 근로자/직원에 대한 직업 훈련 및 기술 제공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li> <li>c. 근로자/직원을 위한 숙박시설, 합리적인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코트 또는 구내식당, 보육원 및 기타 시설의 건설;</li> <li>d. 생산라인에 제공되는 기계의 업그레이드;</li> <li>e. 집에서 공장까지 통근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 숙박시설, 합리적인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코트 또는 구내식당, 보육원 및 기타 시설 등 캄보디아 근로자/직원을 위한 복지 제공.</li> </ol> </li> <li>3. 확대 QIP에 대한 소득세 면제 자격은 하위 법령에서 정한다.</li> </ol>

구 투자법	신투자법 2021
<p>(신설)</p>	<p><u>제28조</u> 본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된 인센티브 외에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투자 분야 및 투자 활동은 재무 관리법에서 규정될 특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p>
<p>(신설)(변경)</p> <p><del>제 15조</del> QIP의 권리, 특권 및 기타 자격은 <del>제 14조 8항</del>에 규정된 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p>	<p><u>제 7장 투자 프로젝트의 인수, 매각 또는 합병</u></p> <p><u>제29조</u> QIP의 권리, 특권 및 기타 자격은 <u>투자 프로젝트의 인수, 매각 및 합병을 통한 이전을 제외하고는</u>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p>
<p>(신설)(변경)</p> <p><del>제 14조</del> 8. 어느 투자자를 인수하거나 투자자와 합병한 자는 <u>감보디아 개발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하위 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합병 또는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 투자자의 QIP의 일체의 보장, 권리 특권 및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14조 내용 분리</u></p>	<p><u>제30조</u> 투자 프로젝트의 인수, 매각 또는 합병이 관련 법규에 따라 그리고 <u>CDC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서면 요청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인센티브, 투자 보증 및 이에 수반되는 의무를 잃지 않고 인수, 매각 또는 합병될 수 있다. 상세한 절차는 하위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u></p>
<p>(신설)</p> <p>* 개정투자법 하위법령(Prakas) 내용 추가 2005년 9월 27일 제 111 ANK/BK</p>	<p><u>제 8장</u> <u>투자 프로젝트의 취소</u></p> <p><u>제31조</u> 투자 프로젝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QIP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u></li> <li>2. <u>QIP를 수행하는 법인의 해산;</u></li> <li>3. <u>시행 중인 법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u></li> <li>4. <u>환경, 국가안보, 공익, 국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관계부처/기관의 요청 또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u></li> </ol>

구 투자법

신투자법 2021

(신설)

\* 개정투자법 하위법령(Prakas) 내용 추가  
2005년 9월 27일 제 111 ANK/BK

제32조

본 법 제31조 1항에 따른 취소의 경우, 투자자는 직접 또는 공인된 대리인을 통해 CDC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취소요청서는 투자자 또는 공인된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지원 서류와 함께 수행 불능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본 법 제31조 2항에 따른 해산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그 해산이 자진해산에 의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직접 또는 공인 대리인을 통해 CDC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본 법 제31조 2항에 따른 해산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그 해산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자자는 직접 CDC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취소될 QIP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함께, 최종 법원의 결정문, QIP수행 법인의 해산 관련 서류를 동봉해야 한다.

QIP는 본 법 제31조 3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CDC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제33조

투자 프로젝트가 취소되더라도, 투자자는 세금과 기타 의무 이행으로 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34조

투자자는 현행 절차에 따라 CDC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 의사를 제출함으로써 투자 프로젝트의 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의 경우 CDC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가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투자자는 캄보디아의 관련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

투자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경우, 투자자는 잔여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캄보디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투자 프로젝트가 관세, 특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건설 자재, 건설 장비, 생산 장비 또는 생산 투입물을 5년 미만 사용한 경우, 투자자는 현행 법규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건설 자재, 건설 장비, 생산 장비 및 기타 투입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 투자법	신투자법 2021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변경)</p> <p><b>제 20조</b>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투자자 간의 분쟁은, 토지와 관련된 분쟁을 제외하고는, <u>캄보디아 개발위원회, 투자자 및 해당 분쟁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우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u></p> <p>서면으로 조정 요청을 받은 후 <u>2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이 우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분쟁은 그 중 어느 당사자가 아래와 같은 조치에 화부하는 것으로 한다.</u></p> <p><del>—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의 의견 제시 전 조정</d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국내 또는 국제 중재;</li> <li>- 캄보디아의 관련 법원.</li> </ul>	<p><b>제 9장 분쟁 및 분쟁 해결</b></p> <p><b>제 36조</b></p> <p>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투자자 간의 분쟁은, 토지와 관련된 분쟁을 제외하고는, <u>분쟁 당사자가 CDC 또는 지방투자 소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 시, 유효한 절차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쳐 CDC 또는 지방 투자 소위원회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u></p> <p>서면으로 조정 요청을 받은 후 <u>30일 이내에, CDC 또는 지방도 투자 소위원회는 투자자 및 필요한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u></p> <p><u>위의 조정절차가 실패할 경우, 다음과 같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국내 또는 국제 중재;</li> <li>2. 캄보디아의 관련 법원.</li> </ol>